

제 9 장 표준관련 조치

제9.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인증절차라 함은 어떠한 상품이 규정된 목적으로 또는 규정된 조건에 따라 생산, 매매 또는 사용되도록 허가를 부여하는 등록, 통보 또는 그 밖의 의무적인 행정절차를 말한다.

적합성평가 절차라 함은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여기에는 특히 표본 추출 절차,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성 보증, 등록, 인가 및 승인이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되어 포함된다.

국제표준이라 함은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채택되어 공포된 표준관련 조치, 그 밖의 모든 지침 또는 권고를 말한다.

국제표준화기구라 함은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자기술표준위원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보건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또는 양 당사국이 지정하는 그 밖의 기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모든 회원국의 관련 기관에 가입이 개방된 표준화기구를 말한다.

정당한 목적이라 함은 국가안보 요건, 사기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과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말한다.

양립가능하게 한다라 함은 상이한 표준화 기구가 승인한 동일한 범위의 상이한 표준관련 조치를 이러한 조치들이 상호 동일해지거나 같은 목적을 달성하도록 수정되거나, 또는 상품들이 상호 대체하여 사용되거나 같은 목적을 달성하도록 허용하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이라 함은 상품이나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용, 규칙, 지침 또는 특성들을 규정하고 공인된 기구가 승인한 문서로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 아닌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가능한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및 상표부착 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를 배타적으로 다룰 수 있다.

표준화 기구라 함은 표준화에 있어 인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표준관련조치라 함은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말한다.

기술규정이라 함은 적용가능한 행정 규정을 포함하여 제품 특성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 및 생산방법을 규정한 문서로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인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가능한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 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를 배타적으로 다룰 수 있다.

제9.2조 일반 규정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규정된 조항들에 더하여 이 장에 규정된 조항들을 적용한다.

제9.3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양 당사국간의 상품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 당사국의 표준관련 조치 및 이러한 조치와 관련된 양 당사국의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 장에 포함된 규정은 제8장이 규율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부기관이 준비하고 정부기관의 생산이나 소비 요건을 위한 기술 사양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15장이 적용된다.

제9.4조 기본적 권리 및 의무

표준관련 조치를 취할 권리

1. 각 당사국은 승인절차를 포함하여 표준화 조치의 시행 및 준수를 확보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각 당사국이 정당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표준관련 조치를 준비, 채택, 적용 또는 유지할 수 있다.

의무의 범위

2.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가능한 규정을 준수하며, 자국 영역내에서 정당하게 인가된 비정부 표준화기구의 조치뿐만 아니라 이 장의 준수를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한다.

3. 각 당사국은 표준관련 조치와 관련하여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다음의 대우를 부여한다.

가. 내국민대우, 그리고

나. 자국이 어떠한 비당사국의 유사 상품에 대하여 부여한 최혜국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불필요한 장애

4. 어느 당사국도 양 당사국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야기할 목적으로 또는 그와 같은 효과를 낳는 어떠한 표준관련 조치도 준비, 채택, 유지하거나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하여 표준관련 조치는 정당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에 초래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보다 더 무역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당해 조치의 목적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증가능한 경우,

나. 당해 조치가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리고

다. 당해 조치가 정당한 목적에 합당한 타방 당사국의 상품을 배제하기 위해 운용되지 않는 경우.

국제표준의 사용

5. 각 당사국은 국제표준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중이거나 완성이 임박한 관련 국제표준을 자국의 표준관련 조치에 대한 기초로서 사용한다.

제9.5조 양립성

1.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표준관련 조치의 중대한 역할을 인식하여, 양 당사국은 이 장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 그리고 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의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 또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보호의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고, 이 장에 따라 각 당사국에 부여된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그리고 양 당사국간 상품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 표준화 활동을 고려하여, 그들 각국의 표준관련 조치를 양립시키기 위해 실행가능한 최대한도로 노력한다.

3.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자국의 영역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특정한 표준관련 조치와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유지되고 있는 표준관련 조치간의 양립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일방 당사국은 요청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타방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타방 당사국과 협력함에 있어 타방 당사국의 조치가 자국의 조치의 정당한 목적에 적절히 부합한다고 납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가 자국의 표준관련 조치와 다르다 할지라도 타방 당사국의 표준관련 조치를 자국의 조치와 동등한 것으로 수락할 가능성에 대해 우호적으로 고려한다.

5. 일방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표준관련 조치의 동등성을 수락하지 않는 사유를 타방 당사국에 서면으로 제공한다.

제9.6조 적합성평가 절차

1. 양 당사국의 적합성평가 절차는 비교할만한 위치에 있는 자국 또는 어떤 다른 국가의 유사상품에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에 따라 타방 당사국 영역의 유사상품에 접근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준비 및 채택되고 적용된다.

2. 각 당사국은 적합성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을 보장한다.

가. 절차는 가능한 한 신속하고 비차별적인 순서로 개시되고 완료된다.

나. 절차의 각 단계에 대한 정상적 처리기간을 공표하거나 추정 처리기간을 요청에 의해 신청자에게 알려준다.

다. 신청 접수시 주무기관이나 당국은,

(1) 즉시 문서의 완결상태를 검토하여 불충분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상세하고 빠짐없이 신청자에게 알리며,

(2) 신청자가 필요한 보정행위를 취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빠짐없이 평가 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청자에게 전달하고,

(3) 신청에 결함이 있더라도 신청자가 요청하면 적합성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한 진행하며,

(4) 요청에 따라 신청자에게 신청의 처리상태 및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한다.

라. 신청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적합성평가 절차를 수행하고 적정 비용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

마. 정당한 영업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타방 당사국 상품을 대상으로 한 적합성평가 절차로부터 기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비밀성을 자국 상품에 대해 부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존중한다.

- 바. 타방 당사국 상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부과하는 수수료는 신청자의 시설과 적합성평가 기관의 시설이 서로 달리 위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신, 교통 및 그 밖의 관련 비용을 고려하여, 자국의 동종 상품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비하여 공평한 액수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사. 적합성평가 절차 및 표본 선택 절차를 수행하는데 이용되는 시설의 위치는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불필요하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아. 상품이 적용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에 뒤이어 상품 사양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상품의 적합성평가 절차는 상품이 기술규정 또는 표준을 계속 따르고 있다고 판정하는데 필요한 것에 국한된다. 그리고
- 자. 적합성평가 절차의 운영과 관련한 불만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한다.

3.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각자의 적합성평가 절차의 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한 합의를 협상을 통해 도출하자고 요청하는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4.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절차가 자국이 직접 수행하는 적합성평가 절차나 자국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것으로서 그 결과를 자국이 수락하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정도로 만족스러운 보장을 제공하고 그 관련 상품이 자국의 영역에서 채택 또는 유지되는 적용가능한 기술규정이나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한,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 절차의 결과를 수락한다.

5. 제4항에 의거하여 적합성평가 절차의 결과를 수락하기 전에 그리고 각 적합성평가 결과의 항구적인 신뢰성에 대한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 양 당사국은 인가와 같은 수단을 통한 관련 국제표준과의 합치성에 대한 검인문제를 포함하여 적합성평가 기관의 기술적 능력과 같은 문제에 관해 협의한다.

6. 각 당사국은 인가, 승인 또는 인정이 양 당사국에 상호 이익이 되어야 함을 인정하면서, 자국 영역 내의 적합성평가 기관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타방 당사국 영역내의 적합성평가 기관을 인가, 승인 또는 인정한다.

제9.7조 인증절차

각 당사국은 필요한 만큼 제9.6조제2항의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자국의 인증절차에 적용한다.

제9.8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표준관련 조치의 목록을 유지하고 타방 당사국이 요청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타방 당사국이나 타방 당사국의 이해관계인이 문서 전체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배달비용은 별도로 하되 국내에서 구입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2. 일방 당사국이 표준관련 조치의 준비과정에 자국 영역내의 비정부 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의 비정부 인의 참여도 허용한다. 이러한 참여시 타방 당사국의 비정부 인은 표준관련 조치의 준비에 관하여 의견과 논평을 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9.9조 정보제공의 제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당사국에 대해, 공개할 경우 자국의 핵심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간주되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10조 표준관련조치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부속서 9.10에 의거하여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표준관련 조치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시행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나. 일방 당사국이 비강제적인 기술적 조언 및 권고 규정을 포함하여 이 장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의문을 가지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표준관련 조치, 계량관련 조치 또는 그 밖의 관련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다. 양 당사국이 자국의 표준관련 및 계량관련 조치를 양립가능하게 하는 과정을 촉진,

라. 양 당사국이 표준관련 및 계량관련 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협의하는 포럼을 제공,

마. 양 당사국간의 기술적 협력활동을 증진,

바. 양 당사국의 표준화 시스템,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절차 및 계량체계의 발전 및 강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

- 사. 이 장의 이행에 관해 자유무역위원회에 대한 연례 보고,
- 아. 양 당사국간의 상호인정협정의 협상과정을 촉진, 그리고
- 자. 필요할 것으로 간주되는 소위원회의 설립과 소위원회의 활동범위 및 임무에 대한 결정.

3. 위원회는 상호 합의에 따라, 적어도 매년 한차례 회합한다. 회의는 양 당사국이 합의시 전화, 화상회의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해 개최될 수도 있다.

제9.11조 기술협력

1.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을 제공한다.

가. 타방 당사국의 표준관련 조치 및 그러한 조치와 관련된 활동, 진행과정 및 체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정보 및 기술 지원, 그리고

나. 특정 관심영역의 표준관련 조치와 연계된 자국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2. 각 당사국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참여를 통한 것과 같은 표준화 활동에 있어 자국 영역내의 표준화 기구가 타방 당사국 영역내의 표준화 기구와 적절히 협력하는 것을 장려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이 수행해 온 표준관련 조치에 관한 국제협정 또는 프로그램에 관해 가능한 한 최대한의 정보를 타방 당사국에 제공한다.

부속서 9.10
표준관련조치위원회의 위원

1. 제9.10조의 목적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부서의 대표자로 한다.
 - 가. 칠레에 대하여, 경제부 무역국 또는 그 승계부서, 그리고
 - 나. 한국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또는 그 승계부서.

2. 각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작업에 참여하도록 표준관련 조치를 담당하는 다른 관련 정부기관을 초청할 수 있다.